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 12 선고 2021가단32155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국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유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혜란, 윤주민

변 론 종 결 2022. 10. 6.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1. 25.까지 C 주식회사(이하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사임하였고, D는 원고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C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원고가 사임한 2021. 1. 25.부터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는 D의 처로서 2020. 11. 15.부터 C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D는 원고와, D, 원고, 피고 3인의 명의로 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20. 2. 25.자 연대보증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하고, 이 사건 이행각서에 의하여 표상되는 원고와 피고의 연대보증계약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고, 원고에게 대리발급한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연대보증 이행각서

채권자 원고(이하 이 표 내에서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D(이하 이 표 내에서 “을”이라 한다), 연대보증인 피고는 아래와 같이 발생한 채무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로 해당 건에 대한 채무 책임 전체를 부담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연대보증 이행각서를 작성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의 채무금액에 대한 갑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전적으로 을과 연대보증인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제2조(채무변제 범위)

1. E: 88,400,000원(설비구매대금)
2. 갑의 차용금액: 31,000,000원
3. 을로 인한 갑 통장 가압류 비용: 30,000,000원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을과 연대보증인의 채무변제가 완료될 시점까지이다.

제4조(상호협의를)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채무 내용 및 별도 내용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다.

다. 원고는 2021. 3. 10. 피고에게 2021. 3. 15.까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채무 149,4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D는 C이 E에게 미지급한 설비구매 대금 88,400,000원에 대하여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고, E는 위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원고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30,000,000원을 추심하였다. 또한 D는 원고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원고로부터 31,000,000원을 차용하였다.

2) D는 원고에게 위 합계 149,400,000원(= E 설비구매대금 88,400,000원 + 차용금 31,000,000원 +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발생한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정한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149,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D가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이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라고 다투나, 설령 D가 피고로부터 대리권의 수임 없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D와 피고는 부부 사이로서 기본대리권인 일상가사대리권이 존재하고 있었고, 원고로서는 C의 사내이사로서 C의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가 그 남편인 D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효과가 귀속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이행각서는 D가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D에게 31,0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또한 원고가 D로 인하여 E에 대한 설비구매대금 88,400,000원을 부담하게 되었다가 30,000,000원을 추심받게 되었다면 E에 대한 설비구매대금은 위 30,000,000원이 감액된 58,400,000원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 주장 대여금에 위 설비구매대금 및 추심금액을 단순 합산한 방식으로 금액을 산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수권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1)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소지자에게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2) 피고의 남편인 D가 이 사건 이행각서 중 연대보증인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뒤, 원고에게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통상 그 남편은 처의 인감도장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점, ② D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대표이사 사임건으로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위해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로부터 인감을 받았으며,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에 관하여 말하였던 적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③ D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에 관한 위임장 등이 작성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가 대리인인 D를 통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

1) D가 피고의 남편으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원고가 D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D에게 그 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D에게 그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6068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남편은 그 처의 인감도장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으므로, D가 피고의 인감 및 대리발급한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D에게 그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는 C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데, 피고가 C의 사내이사로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하거나, D가 이전에도 피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조달을 한 적이 있다거나,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사내이사로 D가 등재되어 있다는 점 등을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이행각서는 원고와 D 사이에서 C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가 D의 처로서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D의 채무를 피고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이전에도 D에게 사업 자금을 융통하여 준 적이 있다거나,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사내이사로 D가 등재되어 있다는 점 등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이나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이나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에 관한 권한을 D에게 위임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피고의 남편으로 그 처인 피고의 인감 등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에 관한 피고의 의사나 D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D에게 수여하였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민법 제126조를 근거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효과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유빈